곤돌라(Gondola)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1장 제9절(양중기)의 규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곤돌라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커튼월, 복합판넬, 유리, 석재, 도장, 청소, 견출작업 등 가설식 곤돌라를 이용한 건물 외부작업 시에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곤돌라(Gondola)"라 함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, 승강장치, 기타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,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한다.
 - (나) "적재하중"이라 함은 운반구(Cage), 훅(Hook) 등의 자체중량을 뺀 운반구에 사람 또는 화물을 싣고 상승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하며, 하강전용 곤돌라에서는 그 구조상 운반구에 사람 또는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.
 - (다) "허용상승속도"라 함은 곤돌라의 운반구에 적재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싣고 상승시킬 경우의 최고속도를 말한다.
 - (라) "허용하강속도"라 함은 곤돌라의 운반구에 적재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적재하고 하강할 경우에 허용하는 최고속도를 말한다.